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71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20.

다.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3).

Ⅲ. 검토의견

1.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현행	개정안
○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제11조의3) - 외화건전성부담금을 부담금을 부과 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6항) - <신설> - <신설>	○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제11조의3) - 외화건전성부담금을 부담금을 부과 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u>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u>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6항) - <u>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제7항)</u> - <u>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름</u>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화건전성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동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화건전성부담금을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①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 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납부고지된 부담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한편, 「행정기본법」은 제36조에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말일로 한다.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현행법과 개정안 간 이의신청 규정 비교]

구 분	외국환거래법		행정기본법
	현행	개정안	
신청기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시행령에서 규정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15일 이내 * 시행령에서 규정	14일 이내	14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청구하는 간이불복절차의 일종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령과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나 통지 기간 등 이의신청 절차가 상이한 경우에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 제36조와 같이 ‘30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함.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하면 처리결과가 보다 신속하게 통지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유리함.

그리고 동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행정절차에 관한 법령의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²⁾

참고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이의신청 기간 등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02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2)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이의신청 절차를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 ⑤ (생략)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 <u><신설></u> <u><신설></u> <u>⑦</u> (생략)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u> <u>⑦</u>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⑧</u>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 <u>행정기본법</u> 」 제36조에 따른다. <u>⑨</u> (현행 제7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5